

요 약 문

과 제 명	글로벌프런티어사업 사업종료 후 연구단별 지속발전 모델 정립 연구		
연구기간	2017.03.29. – 2018.01.28.	연구기관	비즈니스전략연구소
<p>제 1 장 서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제1장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, 연구목적, 연구범위와 방법, 연구의 흐름 및 수행 체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. □ 이 연구는 세계 1등 원천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수행된 약 10년간의 글로벌프런티어사업 종료에 대비하여,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단에게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 기준과당당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지침 등을 제공하고, 청산하고자 하는 사업단의 재산은 공익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. □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글로벌프런티어사업의 현황 분석, 국내·외 사례조사, 사업 종료 후 연구단의 유지·발전 모델 정립, 해체되는 연구단의 성과관리 및 활용방안 도출을 범위로 하고 있다. □ 연구방법은 국내·외 문헌조사, 단장 인터뷰, 연구단 설문조사, 회계·법률 및 사업화 전문가 자문위원 의견 수렴 등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 종료 후를 대비하여 현재 연구단의 상황과 연구단 애로사항 확인 및 시급한 이슈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단장 인터뷰와 연구단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. ○ 국내·외 문헌조사는 공익법인의 운영 및 해산과 관련된 법제도 검토 및 선행 연구와 현장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여, 연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규모 산정, 고유 목적 사업 및 수익 사업의 범위 선정 등 연구단 유지 근거 마련 및 연구단 해산과 청산 과정에서 주요 이슈사항 해결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. ○ 문헌조사로는 대안을 찾을 수 없는 문제해결 요구사항들에 대해 실현가능성과 행정효율성을 실증하고 검토하기 위해 회계, 법률, 사업화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다. ○ 본 연구는 기존에는 한 번도 검토된 적이 없었던 공익법인 형태의 연구단 유지 및 해산 이후의 연구성과 활용방안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. ○ 본 연구는 실정법 범위 내에서 연구성과 활용과 연구단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과 정관의 최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. 			

* 이 글꼴은 (사)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개발한 문체부 돋움체, 바탕체입니다.

제 2 장 글로벌프런티어사업의 특성과 연구단 현황 분석 및 해결 이슈 도출

- 제2장에서는 글로벌프런티어사업의 기획 대비 운영 현황과 연구단별 현황을 분석·정리하고, 글로벌프런티어사업 종료 후의 연구단 유지 및 해산 대비 선결 과제를 도출하고 있다.
- 글로벌프런티어사업은 10년 간 10개 연구단을 선정하여 연구개발에 투자하고, 세계 1등 원천기술의 개발을 목표로 한 사업이다.
 - 글로벌프런티어사업은 G7프로젝트나 21세기프런티어사업이 추격형 연구 개발이었던 것과는 달리 5대 미래전략분야(IT, BT, NT, CT, ET)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‘세계 1등 원천기술’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.
 - 연구 목적성과 독립성 확보, 연구성과 활용을 토대로 한 수입원 기반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, 최초 선정 시부터 연구단을 ‘공익법인’으로 설립하고 연구단장이 핵심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.
 - 글로벌프런티어연구단은 ‘공익법인’으로 설립되어 연구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사업종료 후 연구단이 해산되면 IP와 연구장비 등 축적된 연구성과가 사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, 정부지원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의 연구단 존속 여부와 성과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이슈의 도출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.
 - 따라서, 연구단 보유 연구성과에 대한 파악과 연구단장 인터뷰를 중점으로 연구단 운영 실태에 관한 현황 및 애로사항을 검토하고,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주요 이슈를 도출하였다.

제 3 장 핵심 이슈별 사례 분석 및 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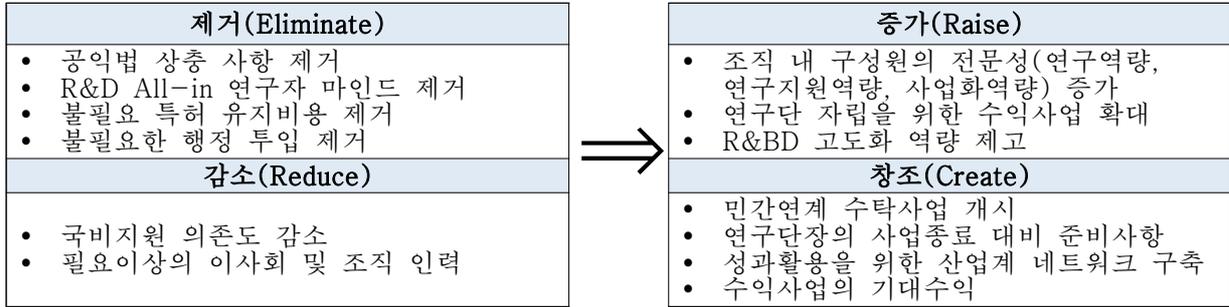
-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도출된 이슈별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, 국내외 유사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.
 - 확인된 이슈들의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외 공익법인 및 연구 중심 법인을 선정하였으며, 각 법인의 유사 이슈 해결 방향에 초점을 맞춰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고 있다.
 - 특히 국내외 다양한 유사사례 중, ‘정부지원사업 종료 후의 법인 운영 및 해산사례’와 ‘공익법인’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대형사업, 국내외 공익법인, 연구법인의 사례를 살펴보고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.

사례 및 시사점 이슈 분류	사례								시사점
	대형사업	국내외 공익법인				연구법인			
	21C 프론티어사업	한국파스퇴르연구소	한국해양재단	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	해외공익법인	우수연구센터	연구소기업	산학연공동연구법인	
사업종료 후 연구단의 지속 여부 결정 필요	●		●	●	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규정 및 정관 변경 연구단 의지/역량 확인 및 의사결정 시스템 마련
사업종료 후 유지하려는 연구단의 운영에 도움이 될 상세 방안 필요		●			●	●	●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종료 후 유지법인의 인력, 운영비, 공간 기준 사업종료 후 적정 이사회 규모
		●			●		●	●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익법인 적합 주요 사업 범위 및 운영방안
		●			●		●	●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 기준
								●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법인 유지를 위한 규정 개정(안) 도출
사업종료 후 해체하려는 연구단의 처리를 원활히 할 상세 방안 필요			●	●	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산 주체 및 범위 결정 해산 및 청산 시기 결정 해산 및 청산 절차 제안
			●	●	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산 및 청산 절차 제안
						●	●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산법인의 IP, 장비 처리 방안 제안
					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산법인의 IP, 장비 처리 방안 제안
사업종료 이후의 연구성과 추적 관리와 활용을 수월하게 할 대안 필요	●					●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성과관리 적정 주체 제안
	●					●		●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 종료 후 성과관리 활성화 방안 도출

제 4 장 연구단 지속발전 모델 정립 방향 및 원칙 수립

□ 제4장에서는 제2장에서 확인된 연구단 현황과 제3장의 사례분석 결과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, 법률·회계·기술·사업화 전문가 인터뷰와 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대형연구단의 연구성과 활용을 위한 전략적 가치와 과제 등을 도출하고 전략캔버스분석(ERRC)를 실시하고 사업 종료 후 대비 핵심 연구성과의 활용 방향을 정립하였다.

* 이 글꼴은 (사)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개발한 문체부 돋움체, 바탕체입니다.



- 글로벌프린티어사업 종료 후의 연구단 발전모델 정립은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연구성과 확산과 활용을 촉진하고 기술수준과 사업화 성과를 제고하여, 궁극적으로는 글로벌프린티어사업을 통해 개발된 연구성과로 기술적·산업적 측면의 파급효과가 창출되도록 지원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.
- 때문에 본 연구는 관련법의 테두리 내에서 연구단의 유지 및 해체 시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를 가급적 용이하게 해결하기 위한 대안 제시에 목적이 있으며,
- 이를 위해서는 연구단 형태인 공익법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, 사업 종료 후 정부지원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유지 역량을 보유할 수 있도록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.

제 5 장 연구단 유지기준 정립

- 제5장은 글로벌프린티어사업 종료 후의 연구단 유지 혹은 해체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.
- 글로벌프린티어사업이 종료되기 이전 적정 시기에 미리 연구단이 유지 혹은 해체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, 이사회와 감독청의 충분한 공감대를 통해 연구단의 운영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.
- 본 장에서는 제3장의 사례분석 결과와 연구개발 기획 및 사업화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연구단이 사업종료 후의 국가지원 단절 후에도 공익법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최소로 구비해야 하는 인력·운영비·재원·공간 등의 규모를 제시하였다.
- 또한, 사업종료 후 폐지되는 사업추진위원회의 기능을 이사회로 편입하여 연구단이 공익법인으로서의 기본 의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.
- 최종적으로 공익법인인 연구단의 존속 여부 판단은 정책적·경제적·행정적 기준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연구단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, 감독청에 제출하고 이사회에서 심의·결정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결정되도록 하였다.

제 6 장 사업종료 후 연구단 운영 모델

- 제6장은 글로벌프런티어사업의 종료 이후, 유지를 선택한 연구단이 운영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연구단 성과 활용 촉진을 위한 목표, 추진전략과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.
 - 연구단이 공익법인으로서의 책임을 유지하면서도 연구성과의 활용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동안 불분명하던 주요 사업을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하고 각 경우를 명시하였다.
 -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재까지는 연구단별로 상이하게 진행되던 수익 사업의 운영 기준도, 기술 이전과 기술 창업으로 구분하여 각 경우의 당면 과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였다.

제 7 장 연구단 해산 후 청산 방안

- 국내의 공익법인은 해산 시 절차는 민법에 따르며, 잔여재산은 공익법 상 강제 규정된 조항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데 법에는 명확한 절차와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운영상 애로사항이 따른다.
 - 제3장에서 살펴본 국내 공익법인의 경우 두 개 이상의 법인이 통합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법인 해산은 민법의 절차대로 운영하였으나 잔여재산은 통합 법인에 이관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.
 - 반면, 본 연구의 대상인 글로벌프런티어사업단의 경우 단독 공익법인으로서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어야 하지만 연구단으로서 이러한 사례가 전무하여 과기정통부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.
- 따라서 본 장에서는 민법과 공익법을 고려하여 법제도 하에서 연구단의 해산 및 청산 과정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고 주무부처에서도 행정적 부담이 비교적 적은 절차와 처리 방안을 제시하였다.

제 8 장 해산 연구단의 성과관리 방안

- 과거 대형 사업단 및 연구단의 정부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연구성과의 추적관리 주체와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연구성과가 사장되거나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하였다.
- 본 연구에서는, 글로벌프런티어사업 종료 후 해산한 연구단의 연구성과인 IP와 연구장비의 관리 주체와 사업 종료 후의 추적관리 방안에 대한 기존의 유사 연구 결과를 현대 시점에 적합하도록 재정비하여 제시하였다.

제 9 장 성과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규정 개선 방안

- 현재 글로벌프런티어사업은 사업종료를 앞둔 3개 연구단의 유지해산 의사결정 및 사업 종료 후의 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.
-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업운영관리지침 개정(안)과 공익법인의 정관 개정(안)을 제시하였다.
 - 사업운영관리지침 개정(안)의 주요 내용은, 단장의 연구개발과제 수탁 허용 및 연구단 보유성과를 토대로 수익사업으로 행하는 기술창업시의 단장 겸직 및 창업 법인 지분 허용과 연구단의 존속 및 해산 의결에 대한 규정 신설이다.
 - 연구단 표준정관(안)의 주요 내용은, 설립 근거 및 목적의 명확화와 공익 및 수익 사업의 범위, 운영재원의 조달과 임원의 구성, 이사회 기능, 연구단장의 역할, 해산 및 청산절차와 잔여재산의 귀속에 대한 내용이다.

제 10 장 결론 및 시사점

- 이 연구의 의의 및 특징, 연구결과의 정책 활용방안,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제시하였다.
- 국내의 기존 대형연구사업의 경우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사례는 있지만 해당 법인은 사무국의 역할만을 담당하고 실제 IP나 연구 장비를 소유한 바 없어, 현재까지 연구단의 해산 이후에 대한 선행 검토 사례는 전무한 바이다.
- 본 연구를 통해 글로벌프런티어사업 종료 후 연구단 지속발전모델은 연구성과의 활용 가능성과 공익법인 형태의 연구법인의 생존 가능성을 모색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, “공익법인”형태로 설립·운영되는 대형 사업단의 사업 종료 후 연구성과의 활용방안과 공익법인의 유지 혹은 해산 방안에 대한 대안을 확보할 수 있다.
- 이러한 지속발전모델은, 공익법인 형태의 연구방법이 연구중심 기능은 물론 기술사업화를 통한 산업계의 파급효과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성장하기 위한 최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.

비공개 사유	[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] 제9조 1항 7호	비공개 기간	연구단 해산 시, 해산 이후 1년 6개월 이후 공개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